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990
----------	------

2017년 8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8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 8월 30일 상정의결 (원안 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 서울시에서는 실질적 성평등의 실현, 서울 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 복지증진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여성가족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이하 “여성재단” 이라 함)’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여성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개정(' 14. 5. 28)된 「지방재정법」¹⁾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고 규정하였는데,
 - 당시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1) 신규대비표

지방재정법 [법률 제11900호, 2013.7.16.,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p>제18조(출자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출자(出資)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외의 단체에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신 설></p>	<p>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강화된 것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며, 매년 출자출연해 온 기존 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적용대상이 되며, 예산 심의에 앞선 예산편성 단계에서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 한 것임.

2. 여성가족재단 설립개요 및 운영현황

- 여성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여성재단 조례” 라 함)에 따라,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 참여 및 복지증진을 통한 성평등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2002년 설립된 이후 2017년 현재까지 15년째 운영 중 임.

- 여성재단 조례에 따른 주요사업²⁾은 ‘여성·가족·보육·저출산,

2)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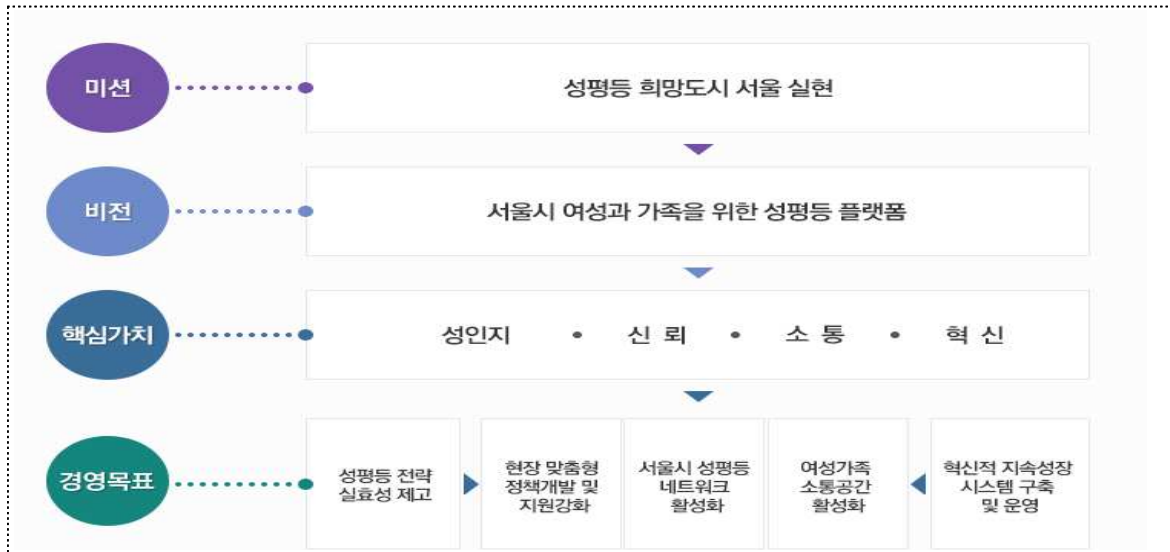
제3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관련 정책 연구·개발
2.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 사업
3. 여성인력 개발 및 경제자원화 사업
4.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국내·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사업
6. 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사업
7. 여성관련 시설간 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사업
8.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 및 관리
9.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관리 및 육성사업
10. 여성관련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및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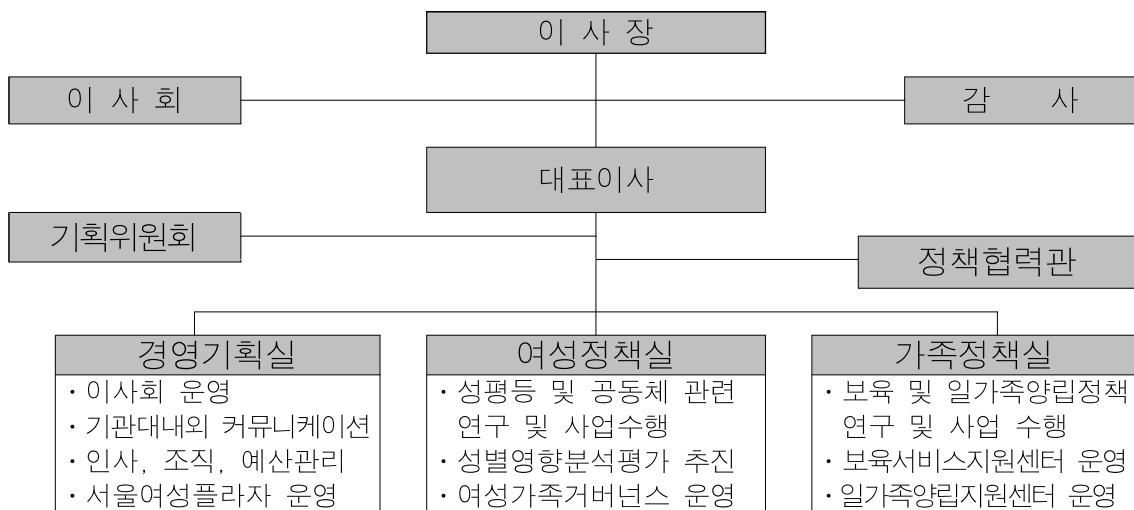
아동·청소년관련 정책 연구·개발’ 사업 및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 사업’ 등 임

- 2017년 8월 현재, 여성재단에서 제시한 기관 운영 미션과 비전체계, 조직 및 인력, 주요시설 현황, 예산현황, 운영실적(최근 3년)은 아래와 같음(그림1·그림2, 표1, 표2, 표3, 표4, 표5).

〈그림 1. 미션과 비전〉



〈그림 2. 조직 : 3실〉



〈표 1. 인 력 : 정원 111명/ 현원 98명〉

구분	계	대표이사	1급	2급	3급	4급	5급	기능직
정원(명)	111	1	2	5	26	22	15	7
현원(명)	98	1	-	3	21	16	12	13

※ 2017.7.26. 정원 증원(직제및정원 규정 개정 완료) : 2018년 예산 확보/채용 예정

〈표 2. 시설개요〉

구 분	주요내용
위 치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면 적	대지6,488㎡, 건축 연면적 22,519㎡
규 모	지하 3층, 지상 5층
건립기간	1999. 11 ~ 2002. 6

〈표 3. 주요시설〉

구 분	주요시설
대관공간	시청각실, 다목적실, 대식당, 세미나실, 회의실, 국제회의장, 아트홀 봄 등
여성가족 사무 및 정책 공간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NGO 공간임대, 성평등 도서관 등
편의시설	시간제보육, 스포츠센터, 수영장, 주차장 등

〈표 4. 2017년 예산〉

수입 (단위: 백만원)		지출 (단위: 백만원)	
구 분	금액 (비율)	구분	금액 (비율)
계	12,701(100%)	계	12,701(100%)
출 연 금	4,417(34.8%)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6,883(54.2%)
자 체 수 입	8,284(65.2%)		
사업운영수입	8(0.1%)		
시설운영수입	4,261(33.5%)		
기 타 수 입	821(6.5%)	일반관리비	5,818(45.8%)
이월 잉여금	482(3.8%)		
기본재산	1,607(12.7%)		
대행사업수입	1,103(8.7%)		
기부금수입	-		

〈표 5. 최근 3년간 주요 운영 실적〉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성평등 전략 실효성 제고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실적	2,182건	2,207건	2,237건
	성주류화 실행주체 역량강화	2,699명	2,978명	3,407명
	성주류화 거버넌스 운영	62개	85개	90개
현장 맞춤형 정책개발 및 지원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정책 확산	-	7건	7건
	일가족양립 진단 및 컨설팅	365건	400건	525건
	일가족양립 인식개선 노력	-	1,002건	1,101건
	보육교직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노력	-	1,039명	2,576명
	돌봄 콘텐츠 개발	-	3건	2건
	돌봄 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상담	2,097건	2,280건	2,466건
	연구형 어린이집 운영	-	2개소	2개소
서울시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여성단체 성장지원	23회	25회	29회
	시민과 함께하는 성평등의식 확산	8건	10건	14건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 정책 확산 실적	10건	11건	11건
여성가족소 통공간 활성화	성평등도서관 여기 프로그램 운영	-	21회	29회
	시간제 돌봄 지원	2,803명	4,161명	4,933명

3.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출연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여성재단에 출연한 예산규모는 총 242억 원으로, 한해 평균 48억원('13년~17년, 5년 평균) 가량이며, 재단의 전체 예산대비 시 출연금의 비중은 평균 44%를 차지하고 있음.

〈표 6. 여성재단 연도별 출연금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예 산 액 (백만원)		비 율 (%)	
	총사업비	출연금	총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	전년도 대비 출연금 증가율
2013	8,648	5,029	58%	-13.2%
2014	9,736	4,690	48%	-6.7%
2015	11,889	4,890	41%	4%
2016	11,923	5,260	44%	7.5%
2017	12,701	4,417	34.8%	△16.0%
총액	54,897	24,286	44.2%	
평균	10,979	4,857	44.2%	

- 여성재단에 대한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³⁾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재원 등)⁴⁾ 및 제11조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영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수탁사업수입금, 지정기부

(기금 및 출연금)⁵⁾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바,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결과적으로, 여성재단에 대하여 출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성재단이 설립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동 재단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가와 관련된 정책적 판단이라 할 것이며, 재단 운영이 필요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 할 것임.
- 이런 점에서 보면, 여성재단은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생활 속 성평등 전문기관으로,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연구와 관련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는 또 서울시의 여성 및 가족, 보육 등의 정책 수립을 위한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로서의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바, 재단의 존립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비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여성재단 출연을 위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여성재단은 서울시 출연 재단 경영평가 결과에서도 꾸준히 상위그룹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볼만 함.

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5)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수탁사업수입금, 재단사업수익금, 지정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지정기부금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기금 및 출연금)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표 7. 연도별(' 12 ~ ' 15) 서울시 출연재단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연번	기관명	2015	2014년	2013년	2012년
1	여성가족재단	89.05 (‘나’ 등급)	85.08 (‘나’ 등급)	90.23 (‘가’ 등급)	89.47 (‘나’ 등급)
2	서울연구원	87.09	91.77	83.32	88.78
3	문화재단	88.21	91.33	84.95	87.55
4	신용보증재단	80.09	89.79	88.78	89.31
5	SBA	91.20	88.56	86.99	92.82
6	복지재단	84.37	86.69	86.02	88.66
7	자원봉사센터	84.82	86.19	84.47	85.92
8	디자인재단	90.12	85.49	82.17	87.54
9	세종문화회관	83.84	83.88	81.23	81.4
10	시립교향악단	80.22	77.64	81.04	77.85
종합(평균)		85.55	86.64	84.93	86.64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990
----------	------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실질적 성평등의 실현, 서울 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 복지증진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8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여성가족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관련법령
 - (공통)법령 : 민법(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개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 조 례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제2항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나. 주요 사업

-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연구·개발
-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자원화 사업
- 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 사업
- 국내·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사업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일·가족 양립 문화 조성 사업
-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 및 관리

다.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 여성·가족·보육, 아동정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 및 시민체감형 정책실행을 위한 역량지원을 위해 설립된 서울여성가족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 서울여성의 경제력 강화, 체감하는 성주류화, 여성안전과 사회통합, 서울 가족 돌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 김성룡 (☎ 2133-5019)